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5조)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나. 시장 및 상점가내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함 (안 제28조제3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함

**다.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규정을 삭제함 (안 제34조)**

-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함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조성원가 매각 규정을 변경함 (안 제35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규정을 영 제42조 규정(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에 의한 조성원가로 변경하여,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유도함

**마.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함 (안 제89조)**

-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함

**3. 개정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84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7. 11. 8. ~ 2007. 11. 28 (특이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08. 1. 3)

다. 신·구 조문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 등의 요율)”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25조제4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제25조제5항중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0조 본문중 “영 제16조 및 제34조”를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로 한다

제3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5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고, 동조제1호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89조제1항 본문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부료 등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 ③(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 등부터 적용한다.
- ④(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p> <p>1.~ 3. (생략)</p> <p>&lt;신 설&gt;</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1.~ 7.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⑤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수한다.</p> <p>제26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p>	<p>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3. (현행과 같음)</p> <p>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p> <p>④ ----- ----- -----</p> <p>1.~ 7. (현행과 같음)</p> <p>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p> <p>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p> <p>⑤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p> <p>&lt;삭 제 &gt;</p>

현행	개정안
<p>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u>&lt;신설&gt;</u></p> <p>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 전년도에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④ (생략)</p> <p>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42조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p>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p> <p>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현행	개정안
<p>또는 재개발사업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 지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p> <p>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제3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의 재산</p> <p>2. ~ 4. (생략)</p>	<p>제3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 -----</p> <p>-----</p> <p>-----</p> <p>-----</p> <p>-----</p> <p>-----</p> <p>-----</p> <p>1. -----</p> <p>-----</p> <p>-----일반산업단지-----</p> <p>-----</p> <p>-----</p> <p>-----</p> <p>-----</p> <p>2.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0조(분수립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lt; 삭제 &gt;</p>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u>1,000만원</u>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u>200만원</u>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p> <p>가. ~ 나. (생략)</p> <p>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u>100만원</u>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 <u>3,000만원</u> -----</p> <p>1. ----- -----<u>600만원</u>-----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 -----<u>300만원</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